

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나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나733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65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운성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 선고 2020. 10. 2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65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묘지 2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0. 1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4.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아버지 망 F2) (H생 3남, 1997년 사망)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D(I생 장남, 1944년 사망)의 동생이다. 결국 원고(J생)와 피고(K생)는 사촌 사이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피고의 아버지 망 D의 소유권취득과 분할 등

1) 망 D는 1943. 3. 3. 경북 의성군 G 전 85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고 있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944년경 사망하였다.

2) 각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1958. 8. 10. 이 사건 토지 26평과 나머지 토지인 G 전 827평(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묘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등기부에 그와 같은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분할 전 토지는 1980. 8. 7. 묘지인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이 사건 G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아버지 F의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의 아버지 F는 위 나의 2)항과 같은 분할등기 직후인 1980. 8. 21.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1971.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앞서 본 것과 같이 1997년경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등기결과 이 사건 G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분리되었다.

2) 원고를 포함한 망 F의 상속인들은 1999. 12. 30. 이 사건 G 토지 등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0. 1. 8.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선조인 할아버지(망 D와 F의 아버지)의 묘소가 위치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아버지 F는 1971. 10. 17. 조카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를 모두 구두로 매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의 아버지 F는 1971. 10. 17. 피고로부터 묘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97. 4. 21. 사망하였다. 이후 F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등 이를 자주점유해 왔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7.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4. 2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는 공동선조인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어서 장손으로서 이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며 매매당사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망 F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를 모두 매수하였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G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굳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위에 원·피고의 공동선조인 할아버지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설령 원고가 위 분묘를 보존 및 관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인섭

판사최미복

판사이준규

1) 원고는 소장에서 '197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기재했으나, 소장과 각 준비서면의 내용, 갑 제1호증의4(폐쇄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1971. 10. 17. 매매'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2) 창씨개명했던 이름은 E이다.

3) 원고는 성질상 선택적 청구에 해당하는 각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순위를 붙여 구하고 있다.